2022년 상지대학교 연구윤리업무 감사결과 보고서

2022. 10. 04.

Ⅰ. 2022년 연구윤리 업무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여건 및 목적

○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채용·입시·연구윤리·재산관리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행정업무에 대하여 업무별로 연 1회 이상 감사(상시감사) 실시 필요

○ 상시감사를 위해 2022. 3. 4. 감사위원회 구성, 2022. 3. 31.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

○ 교육부는 2007년 처음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하여 점검, 보완할 필요

○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규정 또는 지침 마련이 필요

○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등 연구윤리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업무 처리 유도

2. 감사대상 부서 및 주요항목

가. 감사대상 부서

○ 대학 교무연구팀
○ 대학원지원팀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부 연구지원팀

나. 감사 주요항목

○ 연구윤리 자체 규정의 현황과 적정 여부
○ 연구윤리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의 적정 여부
○ 연구윤리교육 현황과 적정 여부

3. 감사경과

○ 2022.07.04. :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 계획(안) 수립
○ 2022.08.02. :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 계획 공지
○ 2022.08.02. : 감사 대상부서 수검 준비사항 안내
○ 2022.08.16. : 감사인 위촉
○ 2022.08.16. :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인 제1차 회의
○ 2022.08.29. ~ 09.02. : 감사인별 담당 사무 자료 검토, 담당자 인터뷰, 감사결과 초안 제출
○ 2022.09.14. : 감사인 제2차 회의
○ 2022.09.29. : 감사결과 강평 실시
○ 2022.10.04. :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4. 감사기간 및 감사위원

가.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 기간

○ 2022.08.29. ~ 2022.10.04.

나. 감사인 5명, 지원인력 6명

다. 감사인 현황 및 담당 사무

○ 2022학년도 연구윤리 업무 감사인 현황 및 감사인별 담당 사무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담 당 사 무
감사인	상지학원	감사	이동규	연구윤리 자체 규정의 현황과 적정 여부
	상지학원	변호사	이명헌	
	신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선회	대학 연구윤리 업무 현황과 운영의 적정 여부
	체육학부	교수	신승엽	
	회계팀	팀장	윤선욱	

II. 일반현황

1. 감사의 범위 및 개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 자체 연구윤리지침 등 마련 현황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구성과 활동 현황
○ 교원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 현황

2. 부서 현황

가. 상지대학교 교무연구팀 연구윤리 담당자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팀장	사무직	이00	* 교원인사제도 및 연구지원제도 수립/개선 * 교무위원회 사무처리, 팀 업무총괄
팀원	사무직	이00	* 교원 인사업무(전임, 비전임) * 생명윤리위원회 및 동물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 그 외 교원 복무 등

나. 대학원지원팀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팀장	사무직	진00	* 대학원지원팀 업무총괄
팀원	사무직	박00	* 졸업, 논문심사, 논문자격시험, 대학원교원강의료, 취업통계

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부 연구지원팀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팀장	사무직	이00	*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 연구비 통계 * 근로계약연구원 급여작성 * 연구자포상, 연구활동지원비, 마중물사업, 전문경력인사 업무
주임	사무직	김00	* 교외연구비 관리(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RCMS 적용과제) * 연구노트, 보안과제 관리 * 연구윤리교육

III. 항목별 점검 결과

1 총 평

○ 상지대학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대체로 법령과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학술진흥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따라 「윤리위원회 규정」과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고,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전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를 제출받고 있는데, 연구윤리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제출 시에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연구자가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작성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 교육이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상지대학교는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관리위원회(생물안전규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안전관리규정)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이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다만 대학 내·외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2017년 2회, 2018년 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연구윤리위원회를 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중요한 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위촉 절차가 시급히 필요함

○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1회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구분없이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연구윤리 교육을 세분화하고,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점검 결과 요약

1. 상지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점검 결과

연번	과제명	시정구분
1	「윤리위원회 규정」중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부분 개정 필요	개선 (규정 개정)
2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중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부분 개정 필요	개선 (규정 개정)
3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개정 필요	개선 (규정 개정)
4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외에 연구윤리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	통보 (제도 마련)

2. 상지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연번	과제명	시정구분
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 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통보 (제도 마련)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바, 조속히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통보 (업무 개선)

3. 연구윤리 관련 교육 현황 점검 결과

연번	과제명	시정구분
1	교원이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통보 (제도 마련)
2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구분하여 대상자별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가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작성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 교육 필요	통보 (제도 마련)

3 점검 결과 및 개선과제 세부내역

1. 상지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검토

가. 윤리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제6조 제2항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성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자료의 중복사용’은 연구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윤리위원회 규정」제6조 제2항 중 ‘자료의 중복사용’을 삭제하고, ‘부당한 중복게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3조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3조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추가할 것을 권고함.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함

(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6조 제2항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시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

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므로, 위 규정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거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를 참고하여 수정함이 적절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다)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는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24조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해당 교원의 명예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막상 해당 심의를 할 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를 참고하여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및 임기)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2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2.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러므로「동물보호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중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제8조 제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도 위원회의 위원인데(제5조 제1항),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면 위원장은 결국 2번 표결하는 결과가 되어 위원회의 의결에 왜곡이 생기게 됨. 또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간혹 있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찾기 어려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이 과반수 규정에 부합함

○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유지한다면,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주관하는 것에 그치고 위원회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되,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이 적절함

라.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관련 연구윤리 규정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제7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제1항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9장 학위청구논문, 제54조(논문심사위원 임무) 제2항은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거나 부분 논문으로서 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내규」제7조(학위청구논문 심사 전·후 제출서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와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후에 다음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비서류로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를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심사 전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연구윤리와 관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로 하여금 논문 제출 시 가칭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본 보고서에 첨부한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는 2022. 3월 한국연구재단이 상지대학교 연구윤리 운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 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주최하거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이 필요함

마.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관련 지침 및 산학협력단 연구노트 관리 규정

○ 본 대학 산학협력단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 및 「산학협력단 연구노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산학협력단에서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음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
제43조(연구윤리 준수)
①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연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과정의 연구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노트 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대통령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

○ 이에 대하여 본 대학은「산학협력단 연구노트 관리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에 연구노트의 요건, 작성항목, 작성방법, 작성방법, 연구노트의 제출 및 소유,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작성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기적 교육이 필요해 보임

2. 상지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점검결과

가. 위원회 운영현황

(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2017년 :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 2016년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사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논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으로 2회 개최

○ 2018년 : 연구부정행위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심의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민주총장 후보자 선거 관련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의 안건으로 2회 개최

(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2017년 :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 최종 확인 등의 안건으로 5회 개최(서면결의 1회 포함)
○ 2018년 :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안건으로 6회 개최
○ 2019년 :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안건으로 5회 개최
○ 2020년 :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안건으로 3회 개최(이메일을 통한 서면회의 진행)
○ 2021년 :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안건으로 5회 개최(화상회의 4회 포함)
○ 2022년 : 상지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개정(안) 심의, 연구심의신청서 심의 등 2회 개최(화상회의 2회)
○ 연구과제 승인 : 2017년도 9건, 2018년도 22건, 2019년도 17건, 2020년도 15건, 2021년도 20건, 2022년도 현재 11건

(다)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2017년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안건으로 2회 개최
○ 2018년 : 동물실험계획 심의 평가 및 동물실험윤리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으로 1회 개최
○ 2019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

으로 1회 개최
○ 2021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상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2021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지도 감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으로 2회 개최
○ 연구과제 승인 : 2017년도 23건, 2018년도 29건, 2019년도 18건, 2020년도 17건, 2021년도 29건, 2022년 현재 23건

나. 점검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관리위원회(생물안전규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안전관리규정)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규정 등에 의거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이 적법하게 시행됨

○ 다만 대학 내·외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의 경우 2014년 5월 15일 제정되고 2015년 3월 2일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짐.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윤리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규정을 검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2017년 2회, 2018년 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연구윤리위원회가 보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중요한 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위촉 절차가 시급히 필요함

○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임기종료시 새로운 위원위촉 등의 절차를 실행하여, 필요할 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연구윤리 관련 교육 현황 및 점검결과

○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1회씩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몇몇 대학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본 대학에서도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2

장 본교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본교의 역할과 책임) ①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연구윤리와 관련한 교육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 명시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구분 없이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연구윤리 교육을 세분화하고,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제5항은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 내에서의 체계화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해 보임

별첨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위조	(1)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있는가?		
변조	(1)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는가?		
표절	(1)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2)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용어, 문장, 표현, 그림, 표, 사진, 영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3)	타인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4)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5)	2차 문헌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한 적이 없는가?		
	(6)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7)	타인의 저작물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였는가?		
	(8)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적절한		

		인용 표기를 했는가?		
부당한 저자 표기	(1)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2)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제외하였는가?		
	(3)	저자들의 표기 순서와 연구 기여도가 일치하는가?		
	(4)	연구자들이 저자 명단과 순서에 합의하였는가?		
부당한 중복 게재	(1)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2)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할 경우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3)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4)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발표한 학술지, 출판사 등으로부터 재활용 동의를 받았는가?		
실험실 안전 위반	(1)	연구수행 중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연구실 외부의 일반인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연구비 사용 기준 위반	(1)	연구개발비 사용 시 올바른 증명 자료를 갖추었는가?		
	(2)	연구 종료 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정직하게 보고하였는가?		
생명윤리 위반	(1)	연구 시작 전에 IRB(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승인을 받았는가?		
	(2)	연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획득하였는가?		
연구성과 부정소유	(1)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소유 및 활용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였는가?		
연구성과 부정사용	(1)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는가?		
연구보안 사항 누설 및 유출	(1)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때 개인정보, 내부정보, 국가핵심기술, 국가 안보 정보등이 제외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2)	연구결과물을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해외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		
연구부정 행위 조사 방해	(1)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없었는가?		
	(2)	제보자, 증인, 참고인, 조사위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는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1)	부실로 의심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은 없었는가?		
	(2)	부실로 의심되는 학회에 참석한 적은 없었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저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연구 수행	연구 수행 전	(1)	모든 연구자가 합의하여 기여도에 맞게 저자의 자격과 순서를 정하였는가?		
	연구 수행 후	(2)	모든 저작가 논문 투고 전 원고를 읽고 이에 동의하였는가?		
		(3)	기존에 정한 저자의 순서와 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이에 모든 저자가 동의하였는가?		
투고 전	투고 규정 확인	(4)	해당 학회의 저자 자격 지침과 원고 투고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였는가?		
	연구 부정 행위 확인	(5)	투고할 원고에게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자 자격 확인	(6)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수와 순서를 결정하였는가?		
		(7)	학회 규정에 맞게 제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정하고, 그 역할에 합의하였는가		
		(8)	모든 저자가 저자 순서에 합의하였는가?		
		(9)	모든 저자는 자신의 소속을 바르게 표기하였는가?		
	중복	(10)	투고할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고 여부 확인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이해 상충/ 사사 표기	(11)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와 연구비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을 성실하게 밝혔는가?		
심사 과정	요구 대응	(12)	편집인 또는 심사자로부터 원고 내용 또는 투고 관련 절차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는가?		
심사 후	원고 수정	(13)	편집인 또는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를 성실히 수정하였는가?		
	이의 신청	(1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게재 후	독자 통신	(15)	논문 출판 후, 독자의 질문, 비평, 의견 등에 성실히 답변하였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위조, 변조, 표절 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연구수행전	(1)	실험회수, 측정 대상 표본의 데이터 규모 등을 연구목적에 맞게 계획하였는가?		
	(2)	실험방법, 관찰조사방법, 설문조사방법 등을 연구목적에 맞게 설계하였는가?		
연구수행중	(3)	실험회수, 측정 대상 표본의 데이터 규모 등을 연구계획에 맞게 충족하였는가?		
	(4)	실험방법, 관찰조사방법, 설문조사방법 등을 연구계획에 맞게 시행하였는가?		
	(5)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6)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연구수행후	(7)	연구설계 또는 관련 규정에 제시된 데이터 또는 결과 기록 양식을 준수하고 있는가?		
	(8)	발표될 논문 원고에서 자신이 작성한 부분은 물론 공동연구자가 작성한 부분에서도 위조, 변조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9)	참고문헌 원문을 정확히 확인하였는가?		
	(10)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였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